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유용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50 발의연월일: 2024. 11. 18.

발 의 자:유용원·임이자·이달희

김형동 · 강대식 · 임종득

권성동・조 국・조경태

성일종 • 유상범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방·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'자'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해당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실질성을 갖추지 못해 법 조항에 따라 재산을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.

이에 군인 주거 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자 또는 '법인'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 주거 여건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전단 중 "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"을 "무주택"으로, "자에게"를 "자 또는 법인에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절차 및 기준에 대하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주택의 우선공급 등) ①	제10조(주택의 우선공급 등) ①
•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국방부장관은 국방・군사시	③
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	
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	
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	<u> 무주택</u>
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	
용도로 사용하려는 <u>자에게</u> 이	<u>자 또는 법</u>
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.	<u>인에</u>
이 경우 「국유재산법」 제49	
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	
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	
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.	<u>.</u>
<u> <신 설></u>	<u>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</u>
	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
	에 관한 절차 및 기준에 대하
	여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